

경제 활력대책 회의  
19-17-1 (공개)



---

#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

---

2019. 6. 26.

관계부처 합동

# 순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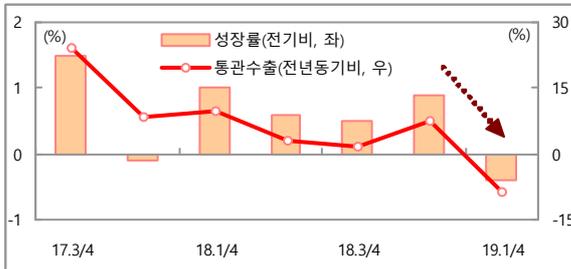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서비스산업의 현 주소 .....	2
III.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기본방향 ['4+1' 전략] ...	7
IV.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(4대 전략) .....	11
1. 서비스업-제조업 차별 해소 .....	11
2. 기초 인프라 구축 .....	14
3. 서비스업-제조업 간 융합 촉진 .....	18
4. 거버넌스 체계화 .....	20
V.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 (+1 전략) ....	22
1. 보건·의료 .....	22
2. 관광 .....	24
3. 콘텐츠 .....	26
4. 물류 .....	27
5. 020·공유경제 .....	29
VI. 향후 조치계획 .....	31
[참고] 세부 실행계획 .....	32

# I. 추진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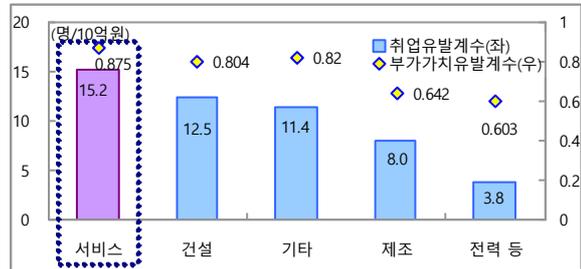
## ◇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(寶庫)

- 최근 수출 부진, 성장을 둔화 등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수 확충,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 시급
-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,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조·건설 등 여타 산업의 부가가치, 일자리 효과를 크게 상회
  -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(寶庫)이자, 큰 발전여지 보유

경제성장률, 통관수출 추이(한은)



품목별 부가가치·고용유발계수(한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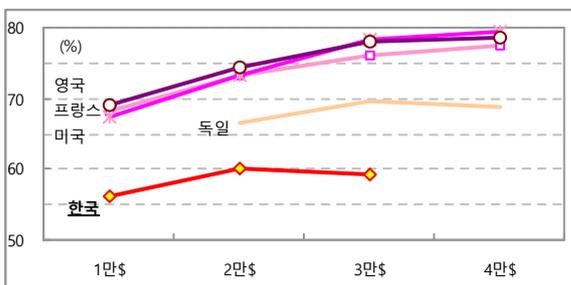


## ◇ 주요국은 경제성장이 고도화되면서 경제의 서비스화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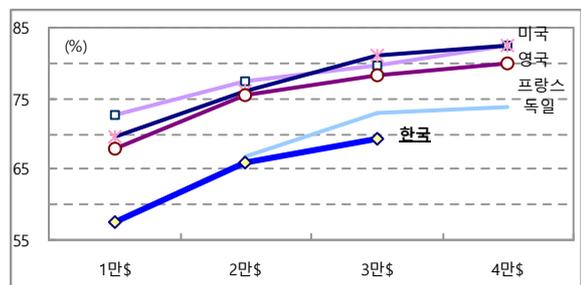
- 주요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늘면서 서비스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해가는 '경제의 서비스화'가 진행
- 동일 발전시점의 주요국 대비 서비스산업 성장 수준 저조
  - 우리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발전 절실

\*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OECD 평균수준으로 제고시 1%p이상 성장률 제고 효과(KDI, '19)

국민소득 단계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



국민소득 단계별 서비스업 고용 비중



## II. 서비스산업의 현 주소

### 1 주요 거시지표 동향

#### ◇ 서비스업의 고용·부가가치 비중 정체 → 경제의 서비스화 지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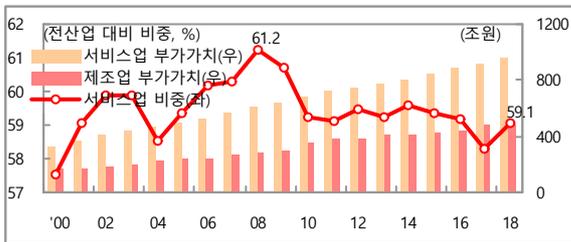
- (부가가치 비중) '02년 이후 60% 수준(全산업 대비)에서 정체중인 가운데, 주요 선진국과 큰 격차가 지속

\*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(% '17년) : (韓) 59.1 ('18년), (美) 79.5, (日) 69.5, (獨) 68.1, (英) 79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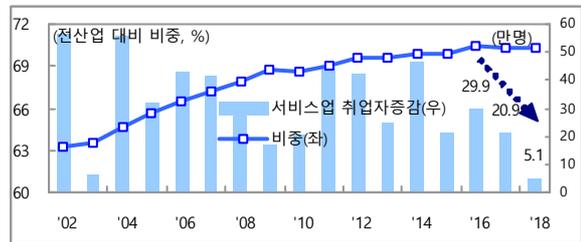
- (고용 비중) '12년 이후 70%내외 수준 유지 중이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조한 상황으로, 최근 몇 년간 고용 창출력도 저하

\* 서비스업 고용 비중(% '17년) : (韓) 70.3 ('18년), (美) 79.9, (日) 72.6, (獨) 74.5, (英) 82.4

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(한은)



서비스업 고용 비중 추이(통계청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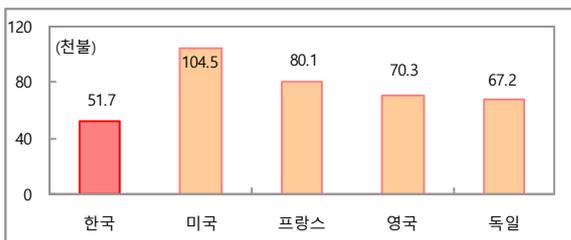
#### ◇ OECD 하위권 수준의 노동생산성 +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

- (생산성) 과도한 서비스산업 규제, 서비스 R&D 미흡 등으로 OECD 하위권(27위) 수준의 노동생산성이 지속(제조업의 45.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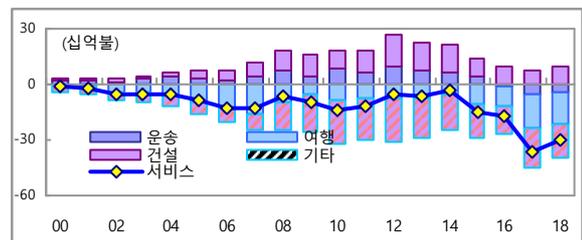
\* 서비스 R&D 비중(% '16): (한국)8.7 (프랑스)46.4 (미국)29.9 (독일)12.4 (일본)12.1

- (국제수지) 사업서비스 등 기타수지가 만성적 적자를 이어가는 가운데, 최근 여행수지 등이 악화되면서 적자폭 확대

주요국 서비스 노동생산성 비교(OECD, '16)



부문별 서비스 국제수지 추이(한은)



\* 서비스업 부가가치(ppp환율)/서비스업 취업자수

## 2 서비스 기업의 창업·성장 동향

### ◇ 영세 서비스업 창업 비중 ↑ + 성장·생존력 ↓ → 성과 저조

□ (창업) '17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(약 20만개)\* 중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창업 기업은 87.3% 수준(약 17만개 내외)

\*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(중기창업지원법상 "창업자")

○ 업종별로는 도소매, 음식·숙박, 운수, 개인서비스 등 영세·생활밀착형 업종 창업기업이 전체 창업기업의 50% 이상

□ (생존·성장) 창업기업 생존율이 저조하고 성장성도 제한적

○ 도소매, 음식숙박업 등 영세·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경우 3년이상 생존하는 기업 비율이 1/3 수준에 불과

\* 산업별 3년 생존율(% , '16, 통계청): (제조업)51.5 (건설업)44.7 (전문과학)47.5 (도소매)37.7 (음식숙박)32.2 (출판영상)40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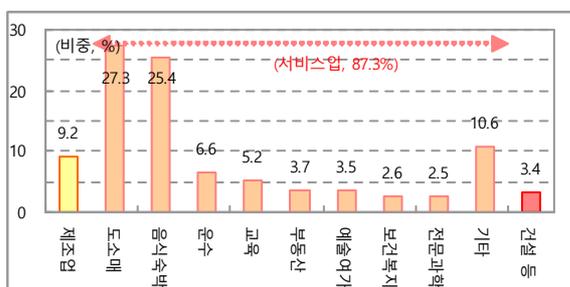
○ 고성장 기업 비율뿐만 아니라 매출 상위 기업 비중도 낮은 상황

\* 3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0%를 상회한 고성장 기업 비율(% , '17, 통계청): (제조업)19.8 (도소매)16.6 (운수)15.2 (보건복지)13.4 (음식숙박)4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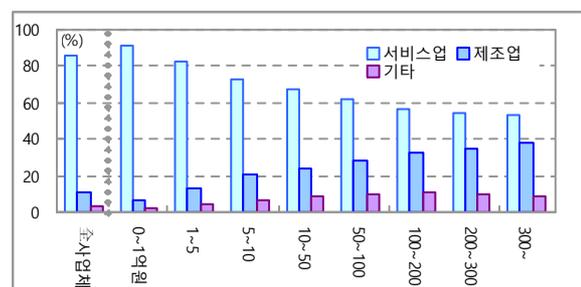
□ (서비스 기업 성과) 창업이 영세업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성장·생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,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성과 저조

\* 주요 기업 기준별 서비스산업 종사기업 비중(% , 각종 실태조사, '17)  
(창업기업)87.3 (중소기업)62.7 (중견기업)52.6 (벤처기업)30.2

창업기업의 업종별 분포(중기부, '17)



년매출액당 업종별 기업비중(경제총조사, '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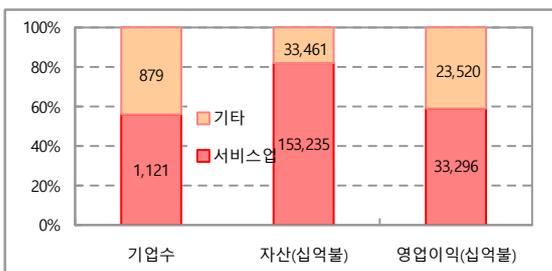


## [별첨] 국내-해외 서비스기업 성과 비교

◇ 新서비스 창업·성장이 활발한 해외와 달리 국내는 각종 규제 등으로 활성화 제약 → 글로벌 서비스 기업 육성에 애로

① 글로벌 우수기업에서 서비스 기업의 비중은 50%를 상회하나 국내 100대 기업(매출액 기준) 중 서비스 기업은 38개사에 불과

글로벌 2,000(Forbes) 기업중 서비스기업 현황



국내 100대 기업중 서비스기업 현황



- 시총 상위 10개 기업 기준, 지난 10년간 미국은 서비스 산업 기업이 늘었으나('08: 5→'18: 7개사), 한국은 오히려 감소(3→2개사)

S&P 500 ('08.9 → '18.9)	
Exxon Mobil	Apple
Microsoft(ICT)	Amazon(도소매)
General Electric	Microsoft(ICT)
Walmart(도소매)	Alphabet(ICT)
Proctor & Gamble	Berkshire Hathaway
Johnson & Johnson	Facebook(ICT)
AT&T(통신)	JP Morgan(금융)
Chevron	Johnson & Johnson
IBM(ICT)	Exxon Mobil
Alphabet(ICT)	Bank of America(금융)

KOSPI ('08.9 → '18.9)	
삼성전자	삼성전자
POSCO	SK하이닉스
국민은행(금융)	셀트리온
한국전력	삼성전자우
현대중공업	삼성바이오로직스
신한지주(금융)	현대차
SK텔레콤(통신)	POSCO
현대차	LG화학
LG전자	NAVER(ICT)
KT&G	삼성물산(상사, 패션)

② 국내 규제 기준으로 글로벌 Top 100 스타트업의 70%(투자액 기준)가 정상적 영업활동 불가(아산나눔재단,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, '17년)

\* 불가 40.9%(13개 기업), 조건부 가능 30.4%(44개 기업)

- 특히 한국에서 불가능한 사업 모델 모두 서비스 산업에 해당

\* 주로 의료, 교통, 게임, 핀테크 업종 등에서의 규제에 저촉

## ◇ 서비스산업에서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

- (경과) 내수 확충·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추진
  - '01년 이후 20차례의 서비스산업 대책(종합대책+업종별대책) 마련
  - '11년부터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노력 지속
  - 최근에는 서비스 R&D 추진전략\*(18.2),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\*\*(19.1), 4대 유망서비스 업종별 혁신전략(19.上) 등 추진

\* 서비스 R&D 세제 혜택, 서비스 R&D 전문기관 육성 등

\*\* 도시지역 내국인 숙박공유 허용(연 180일 내), 과세·보험 분야 제도기반 마련

- (평가) 서비스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, 서비스산업에서의 성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
  - 상당수 과제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거나,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빈번
    - \*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'11년부터 국회 계류 중
  - 정책적 측면에서도 그동안의 노력에도 규제·지원 등에 있어 서비스업-제조업 전반의 차별이 여전히 잔존(별첨)
    - 재정·세제·금융에서의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서비스업도 다양한 정부 지원 틀 내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
    - 온라인 산업화, 융복합 활성화 등 新서비스업 출현에 따라 기존 업종 분류체계를 넘어선 새로운 정책 대응도 필요

## [별첨] 서비스업-제조업간 차별 현황

◇ 그동안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·지원 등에 있어 서비스업-제조업 전반의 차별이 여전히 잔존

① (규제) 제조업 대비 높은 규제로 인해 기술 혁신,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 저해

\* 한국의 서비스부문 규제 건수는 제조업의 4배 수준 → 혁신활동 저해(OECD, '16)

② (지원) R&D·금융·세제 및 여타 창업·성장 지원 등 차별

▪ (R&D) 민간 서비스 R&D가 주요 선진국 수준\*을 크게 하회하고 정부 서비스 R&D도 전체 R&D 예산의 4~5%에 불과

\* 서비스 R&D 비중(% '16년) : (韓) 8.7 (獨) 12.4 (美) 29.9 (日) 12.1 (佛) 46.4

\* 정부 서비스 R&D(억원%) : ('16) 5,788/3.0 ('17) 6,647/3.4 ('18) 7,734/3.9 ('19) 9,482/4.6

▪ (금융) 정책금융기관에 의한 대출·보증·보험 중 서비스분야 비중은 약 40%('18)로, 서비스산업 비중(60%) 대비 낮은 실정

▪ (세제) 창업기업 조세감면(소득·법인세 등) 등 일부 세제지원 혜택이 여전히 제조 + 일부 서비스업에 부여

\* 투자세액공제 혜택(조특법 5조) 등은 모든 서비스업 대상(일부제외, 네거티브 방식)으로 既 개편되었으나, 창업 세액감면 등은 여전히 열거식

▪ (혁신 인증) 혁신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창업 후 성장·스케일업을 돕는 제도적 혜택 역시 주로 제조업 기업 중심

\* 인증제도별 서비스기업 비중(%): (벤처)30.2 (이노비즈)17.9 (메인비즈)39.7

\* 기업의 혁신성 판단지표가 '기술수준'→일부 업종(ICT·전문과학 등)을 제외한 서비스업 기업에 원천적으로 불리

▪ (기타) 여타 자금·컨설팅·보증지원 등 주요 창업지원 사업 역시 제조업과 일부 유망서비스업에 한정하여 운영 중

### Ⅲ.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기본 방향 (4+1 전략)

#### 1 기본 방향

#### 비전 · 목표

**내수 확대, 일자리 창출,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 
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과 활력 제고**

⇒ **기대모습** :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5%p 확대( '18: 59.1%→ '23: 64%)  
+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 → 「5 + 50」 달성

#### 추진 전략 (4)

① **차별 해소** :  
재정·세제·금융 등

◆ **재정·세제·금융** 등에서의 **차별 해소**

▪ 창업시 부담금 면제·조세감면 혜택, 정책금융 지원 등

◆ **서비스산업 수출 및 해외진출** 지원

② **기초 인프라 구축** :  
정보화, 표준화,  
R&D, 규제혁신 등

◆ **정보화·표준화 및 인력 양성**

◆ **정부 서비스 R&D 규모 및 R&D 세제지원** 확대

◆ **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**

③ **서비스업-제조업  
융합** 촉진

◆ **사업 서비스업 육성**

▪ 제조전문 서비스, 연구개발 서비스 지원 등

◆ **ICT 접목을 통한 생산성 제고**

▪ '스마트 서비스' 사업 신설

④ **거버넌스 체계화** :  
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
입법 등

◆ **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** 제정 및 후속조치 추진

▪ 특성화 교육기관 및 전문연구센터 지정 등

◆ **서비스산업발전** 委 구성, 중장기 **기본시행계획** 마련

#### 성과 창출 (+1)

⑤ **유망서비스 업종별  
체감형 성과** 창출

◆ **보건·관광·콘텐츠·물류** 등 유망서비스 규제 개선

▪ 의료관광 활성화, 사후면세점 제도개선, 물류투자 활성화 등

▪ 복합 테마파크 조성·산림 휴양특구 도입 등 성공사례 창출

◆ **020·공유경제** 등 新서비스 육성

## 2 주요 내용

◇ **투트랙(Two-track) 접근** : 서비스산업 전반의 체계적 혁신 지원 (4대 전략) +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(+1 전략) 병행 추진

### ◇ [4대 전략] 서비스산업 전반의 종합적·체계적 혁신 지원

#### 1 [전략 1] 재정·세제·금융 등에서의 차별 해소

- 서비스산업 지원 근거 마련, 서비스산업 친화적 제도 개편 등 재정·세제·금융 등에서의 서비스업-제조업 차별 해소
  - 제조업이 받는 재정·세제 혜택은 서비스업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 기업의 부담을 경감
    - \* 제조업 한정 → 유망 서비스업(관광, 보건, 물류, 콘텐츠 등), 지식서비스업(정보통신, 금융·보험, 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 등) → 쏘서비스업(네거티브 전환)
  - 서비스산업 금융지원 확대 및 서비스업 벤처 활성화
-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혁신, 해외진출 등에 중점

#### 2 [전략 2] 표준화·R&D·인력양성·규제혁신 등 기초 인프라 확충

- 서비스산업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DB 및 통계 인프라 확충, 서비스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화 전략 마련
- 정부 R&D 투자 대폭 확대 및 민간 R&D 투자를 촉진하고, R&D 성과 가시화를 위한 서비스 R&D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시
  - \* 성과 R&D 과제 발굴 → 기술개발 → 기업과의 성과 공유·확산을 유기적으로 추진
-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
- 규제입증책임제,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핵심규제 개선 및 경제자유구역내 서비스 규제특례 부여 추진 등 제도개선 병행

### ③ [전략 3] 서비스업-제조업 융합 촉진

- 제조전문·연구개발 등 사업서비스와 디자인·엔지니어링 제조 지원 서비스업 육성으로 제조업의 부가가치 제고

- 중소 서비스기업의 ICT 활용을 촉진('스마트 서비스' 지원)하여 생산성 향상과 혁신 촉진 지원

\* 프로세스 관리(로봇자동화, 물류시설 자동화), 사물인터넷(IoT) 접목, 고객관리 등 ICT 솔루션을 중소서비스 업종·기업 맞춤형으로 지원

### ④ [전략 4]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 거버넌스 체계화

-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및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, 입법 이전에도 관계부처 협업으로 가능한 조치 우선 추진

-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을 통해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협의·해소

### ◇ [+1 전략]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서비스업 체감형 성과 창출

- 상반기 마련 중인 4대 유망 서비스업 업종별 대책\*과 병행하여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한 주요과제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

\*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(4.2일),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(5.22일) 등

- (보건)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, 규제 개선을 통한 新시장 창출

- (관광)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, 테마파크·산림휴양 투자애로 해소

- (콘텐츠) 실감·게임·영상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핵심 인프라 확충

- (물류) 첨단 물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

- (O2O·공유경제) 온라인 기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

## [별첨] 「서비스산업 혁신 전략」의 중점 대상

- ◇ 지원체계 정비, 규제혁신 등을 통한 '산업육성'에 중점
  -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(4대 전략) : 서비스업-제조업간 차별 해소, 인프라 구축, 융복합 촉진, 거버넌스 체계화 등
  - 업종별 성과 창출(+1 전략): 관광·보건·콘텐츠·물류 등 4대 유망업종 중심(온라인 환경을 반영한 O2O 등 신서비스 포함)
- ◇ 업종별 여건·정책적 고려를 감안한 맞춤형 정책은 별도추진 중
  - \* (도소매·음식숙박) 자영업 지원 / (복지)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복지수요 대응 등

### < 「서비스산업 혁신 전략」의 대상( ) >

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(4대 전략)	업종별 성과창출 (+1 전략)	서비스 산업 16개 대분류(ISIC)	별도 대응	
① 재정·세제·금융 등 차별 해소  ② R&D·규제·표준화 등 기초 인프라 구축  ③ 제조업+서비스업 융합 촉진  ④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 거버넌스 체계화	① 관광	도소매(G)	자영업 정책	
	④ 물류	숙박·음식(I)		사회서비스 정책
		③ 콘텐츠		
	② 보건·의료			
		⑥ O2O·新서비스업	운수(H)	
	* O2O·新서비스업은 ICT 플랫폼 활용 등으로 쏠서비스 업종에서 출현		전문과학기술(M)	사회서비스 정책
		출판영상방송(J)		
		보건·복지(Q)	자영업 정책	
		사업지원(N)		
		금융·보험(K)	소관분야 정책 (예: 금융·교육 부동산·국방 환경정책 등)	
		교육(P)		
		부동산 등(L)		사회서비스 정책
		공공행정·국방(O)		
		하수·폐기물처리(E)		자영업 정책
		가구내 고용(T)		
		국제·외국기관(U)		사회서비스 정책

## IV.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(4대 전략)

### 1 서비스업-제조업 차별 해소

◇ 재정·세제·금융 등 다양한 지원 제도에서의 서비스-제조업 차별을 해소하고,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

#### ◇ 재정·세제·금융 등에서의 차별 해소

1] (재정)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 대비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법령·제도 등을 개편

-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확립
- 관련 재정지원 개별법령·규정 등 제·개정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취지를 반영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화

○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6개 부담금\*(창업후 3년) 면제 혜택을 제조업→지식서비스업\*\*까지 확대 추진

\* 수질배출부과금, 대기배출부과금, 물이용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 등

\*\* 정보통신업, 금융 및 보험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지식의 집약도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서비스업(산업발전법 시행령)

○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적용대상을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서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쏠서비스업종으로 확대\*

\* 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·운영업 등 미풍양속 저해 업종 제외 (음식·숙박업, 스키장 운영업, 금융보험업, 부동산업, 기타 개인서비스 등 신규 추가)

○ 성공창업과 지속성장에 필요한 사업화를 성장 단계별로 지원 하는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\*

\* (현행) 제조업 + 지식서비스업 → (개선) 미풍양속 저해 업종 외 쏠 서비스업

○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영컨설팅(현장클리닉 등)을 지원(기업당 최대 1,500만원)하는 사업의 대상 업종을 확대\*

\*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대상(음식숙박, 개인 등) 및 주류·담배중개, 컨설팅업종 등을 제외한 쏠 서비스업으로 확대(교육, 보건, 금융보험, 여가, 도소매 등 신규 추가)

## ② (세제) 일부 서비스 업종에 국한된 조세감면 특례를 확대

-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\*을 부적합 업종\*\*을 제외하고 대폭 확대

\* 현재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(세세분류기준 620개중 148개) 등에 한해 지원 (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5년간 소득세·법인세 50% 감면 등)

\*\*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, 고소득·자산소득 업종, 소비성·사행성 업종 등 제외

-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업종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\* 서비스 업종 확대\*\*

\* 현재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(세세분류기준 620개중 422개) 등에 지원

\* (예시) 창작·예술, 스포츠, 도서관·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

## ③ (금융)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·펀드 지원 확대

- 산·기은, 수은, 신·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선도로 4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공급 대폭 확대('19~'23, 70조원)

\* 연도별 공급계획(조원, 안): ('18)11.8 ('19)12.8 ('20)13.4 ('21)14.0 ('22)14.6 ('23)15.2

- 스케일업 전용 펀드('18~22년간, 총 15조원)를 활용해 서비스 산업에서도 혁신창업-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 지원

- 설비투자·사업재편 등을 지원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(3년간 10조원)의 대상 업종을 유망서비스업까지 확대

\* ( ) 4대 주력산업 8대 핵심선도산업 → (개선) 관광·보건·물류·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 포함

-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 서비스 기업의 사업전환, 구조개선, 재창업 등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확대('19: 700→'22: 1,000억원)

- 기술형 청년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 보증을 제공하는 청년희망드림보증 사업의 지원대상 업종 범위를 확대

\* (현행) 제조업 + 의료·관광·콘텐츠·교육·금융·SW·물류 → (개선) 지식서비스업 추가

- 정책금융의 유망서비스 지원근거 확충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 자문단을 구성하여 “혁신성장 공동기준” 내 유망 서비스품목 확대

\* 혁신성장 분야를 구체화한 최초의 기준(9개 테마, 45개 분야, 300개 품목)

#### ④ (벤처) 유망 서비스업에서의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

- 콘텐츠 및 신서비스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유형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요건을 확대\*

\* 기업부설 연구소 외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추가,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가능 서비스 업종 확대(유흥업 등 외 쏘업종 허용)

- 서비스 업종 전용 기술·혁신성 평가 제도('17 신설) 활용도 제고를 위해 홍보 강화(유관 홈페이지 게재, 서비스 관련 협단체 안내 등)

### ◇ **무역금융·수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**

#### ① (해외진출 활성화)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 방안 마련('19.9)

- 우리기업의 경쟁력 및 해외진출 수요, 분야별 성장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유망서비스 분야를 선정해 해외진출 집중 지원

\* 수출마케팅 확대(해외전시회, 상담회), 정보제공(규제·인증), 시장확대(FTA) 등

#### ② (무역금융 지원) 서비스 수출금융 확대 및 무역보험 우대 연장

- R&D, M&A, 콘텐츠 제작자금 등 서비스 산업 업종별 맞춤형 수출금융 확대('19: 3.1조원 → '20: 3.4조원 → '21: 3.7조원)

- 유망서비스업\*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, 부보율 상향\*\* 등 우대 지원제도 일몰연장('19.12→20.12월)

\* 의료, 관광, 콘텐츠, 물류 등

\*\* (보험료) 10% 할인 (부보율) 중소 97.5→100%, 중견 95→97.5%

#### ③ (사업지원 확대) 주요 수출지원 사업 대상 업종 및 기업 확대

- 수출바우처·온라인 수출 지원사업·수출인큐베이터 사업 등의 대상업종을 지식서비스업 → 쏘서비스업종 대상으로 확대

\* 단, 도박, 복권 등 사행산업, 주류, 담배 등 건강유해산업 등 일부 업종 제외

-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우대 지원\*하는 수출 유망중소기업의 서비스 기업 지정 확대('19: 300→'20: 500개사)

\* 중진공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, 수출금융·보증 등 지원시 우대

## 2 기초 인프라 구축

◇ 서비스산업 **정보화·표준화, R&D 활성화, 인력 양성, 규제 혁신** 등 서비스산업의 **질적 도약**을 위한 기틀 마련

### (1) 서비스산업의 정보화·표준화 지원

◇ **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통계 DB를 구축하고 표준화전략 마련**

#### 1] (정보화) 서비스산업 혁신 기반강화를 위한 통계 DB 구축

- 생산성·고용·생산·부가가치·R&D투자 등 주요 서비스산업 통계를 손쉽게 확인 가능한 통계포털 시스템 구축 및 운영
- 부처별로 분산,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 R&D 과제의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R&D 정보 DB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
\* 서비스 R&D 과제 통합 관리를 통한 중복 예산 집행 방지, 성과 모니터링
- 현재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는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분석 통계를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, 지역별 노동생산성 분석 신규 추진
- 서비스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통계분류 업종을 세분화하여 제공  
\* (현행) OECD 기준(ANA) 7개 분류 → (개선) 국제표준산업분류(ISIC)상 15개 분류

#### 2] (표준화) 서비스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표준 제정·보급 중심의 서비스 표준화 전략 마련('20.上)

- (업종별) 유망서비스\*, 생활밀착형\*\* 업종 중심으로 제공절차·방법·체계·평가방식 등을 체계화하는 표준 개발·보급  
\* 보건·관광·물류·콘텐츠 등 \*\* 소비자 불만분야 고객응대, 피해처리 매뉴얼 개발 등
- (융·복합) 4차 산업혁명 관련 6대 융복합 분야(모바일뱅킹, 드론 등)를 선정하고, 서비스의 구성 및 수행절차 구조화를 통한 표준안 마련
- (표준 재정비) 활용도, 타부처 정책 연계성, 국제 표준화 가능성 등을 평가·분석하여 기존 표준의 재분류·재정비 추진

## (2) 서비스 R&D 투자 확대

### ◇ 정부 서비스 R&D 투자 확대 및 민간 R&D 세제지원 강화

1] (정부 서비스 R&D 확대) 정부 서비스 R&D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5년('20~'24)간 약 6조원 투자\*

\* 구체적 투자규모는 재정운용여건 및 경제상황 변화, 국정과제 등 타 R&D 분야의 투자 소요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○ '19년 서비스 R&D의 경우 경쟁력 강화, 융복합 확산, 원천기술 개발 등 중심으로 전년대비 22.6% 증가한 9,482억원 투자

\* 정부 서비스 R&D(억원/%) : ('16)5,788/3.0 ('17)6,647/3.4 ('18)7,734/3.9 ('19)9,482/4.6

2] (서비스 R&D 네트워크 본격화) 서비스 R&D 개발-성과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, 네트워크 추진체계 확대

■ 시범과제(안): 중소·영세 서비스업 운영경험·노하우의 정량화·체계화, 사업장 3D 모델링, VR·AR 활용 가상테스트가 가능한 서비스 프로토타입(ProtoLab) 구성 등

○ 서비스 R&D 혁신 네트워크(기재부+산업연+생산기술연+생산성본부)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비스 R&D 혁신 정책협의체로 확대 개편

3] (민간 R&D 세제지원 강화) 서비스 산업 분야의 자체수행·외부위탁 R&D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

○ (자체수행 R&D)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전제조건인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가능업종(과학기술 + 지식기반서비스업)을 확대\*

\* 유흥·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암호화폐 매매·중개업 외 소업종 허용

\*\* 조특법상 자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필요

○ (외부위탁 R&D)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R&D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하여 R&D 비용 세액공제 적용

\* (예시) 콘텐츠 창작, 건축공학·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

4] (가이드라인 마련) 서비스 R&D의 개념 명확화 및 업종별 유형·사례 등 서비스 R&D 가이드라인 마련(19. 4/4)

### (3) 인력 양성

#### ◇ 관광·바이오헬스·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의 맞춤형 인력양성

- ① (관광) 취업 전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현장밀착형 인력을 양성\*하고, 신규직종 육성\*\* 등 중장기 관광인력양성 체계 개편

\* 특성화 고교생 호텔리어, 관광(통역)안내사, 숙박종사자, 카지노종사자 등

\*\* 장애인·반려동물 동반 여행코디네이터, 전통시장 해설가, 관광 스토리텔러 등

- ② (바이오) 융합형 의사과학자 등 연구의사를 양성하고, 해외 우수연구기관과 연계한 바이오메디컬 핵심기술 글로벌 인재\* 육성

\* 연간 150명 내외 석박사급 인력을 해외 연구기관, 대학, 병원 등에 파견,

- ③ (물류) 물류산업 디지털화 및 스타트업 시장진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융합형 물류인력 양성 추진(‘20~)

\* 외국어 능력 보유 글로벌시장 개척인력, 안전관리 능력 겸비 현장물류 인력 등

### (4) 서비스산업 규제 혁신

#### ◇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규제혁신 노력 가속화

- ① (규제 개선) 서비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

○ 각 부처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‘규제입증위원회’를 활용하여 기존 규제 심층 재검토를 통한 규제혁신 가속화

○ 특히, 관광·보건·물류 등 고부가 유망서비스 업종별 파급력이 높은 핵심 규제\*를 적극 발굴·개선 추진

\* 업종별 규제개선방안은 「V.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창출」(p.21~)에 포함

② (규제특례 확산)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서비스 규제혁신 본격화

- 경제자유구역내 일부지역에 서비스분야 규제특례 부여를 추진하여 혁신형 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서 활용
-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한 신서비스 지원 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특례심의회(위원장:중기부장관) 산하에 서비스산업 분과위 운영

◇ **국민과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**

① (종이영수증 발급관행\* 개선) 관련 법령 등(부가세법 시행령·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)을 정비하고 홍보 병행

\* 현재 카드단말기에서 종이영수증 자동 발급 → 발행비용, 개인정보 노출, 환경문제 등 발생

- 소비자 의사에 따라 종이영수증을 출력·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, 추후 영수증 확인·출력 편의 제고

\* 카드단말기·POS기기 등 시스템 개선, 전자매출전표 확인·출력 간편화 등

- 효과 제고를 위해 전자영수증 도입·확산 지원 및 '종이영수증 없는 점포' 캠페인 등 병행 추진
- 발급비용 절감혜택을 소비자 혜택으로 환류하기 위한 방안 강구

② (SW 공공조달 입찰제도 개선)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정책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

- 제도 시행 이후 공공 SW산업발전 및 중소 SW기업 성장 기여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(연내)

③ (전시산업 공공용역 대가 합리화) 전시문화산업 업체간 과다 경쟁에 따른 저가 투찰 관행 개선

\* 지난 1년간 10억원 이상 사업 낙찰업체의 평균 투찰율이 사업금액대비 65.9%

- 입찰실태 조사 및 업계·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용역 대가 적정성 확보 방안 마련(연내)

### 3 서비스업-제조업 융합 촉진

- ◇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인 **사업서비스를 육성**하고, 서비스 산업 **ICT 활용을 촉진**하여 **서비스업-제조업 융합발전**을 지원

#### (1) 사업서비스업 육성

#### ◇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위한 제조전문·연구개발 서비스 육성

- 1] (제조전문 서비스업) 설계·디자인·아이디어 등을 제조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제조전문서비스(MAAS) 산업 육성방안 마련('20.上)
  - 온라인 제조 플랫폼 사업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의 시제품 제조 사업을 지원하는 산업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
  - 제조전문서비스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수요 창출을 위해 제조서비스 수요기업 지원 시범사업\* 추진('19.下)
    - \* 40개사 내외를 선발하여 시제품제작 비용의 80%, 2000만원 이내 지원
- 2] (연구개발 서비스업)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 R&D 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고, 비영리기관 대비 차별 해소
  - 중소기업 R&D 바우처 사업 공급기관에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업체 참여를 전면허용하고, 가점 우대 등 참여 인센티브 확대
  -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대학·출연연 대비 받고 있는 차별 해소
    - 출연연이 연구용품 수입시 적용받는 관세감면(80%) 혜택을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에도 적용
    -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희망시 ·출연연 같이 연구간접비 집행원가를 산출하여 기관별 간접비율을 정하는 방식 도입 검토
- 3] (기타 제조지원 서비스업) 디자인·엔지니어링 등 제조지원 서비스업에 적합한 적합한 ICT 솔루션 개발·보급

## (2) 서비스 기업의 ICT 활용 촉진

### ◇ 중소 서비스 기업에 ICT 솔루션 접목을 통해 생산성 향상 지원

- (‘스마트 서비스’ 구축) ICT 솔루션 접목을 통해 서비스 중소기업의 성장·고부가가치를 지원하는 가칭 ‘스마트 서비스’ 사업 신설

\* '20년 100개 기업(잠정)을 대상 시범사업 실시 후 성과를 보아 추후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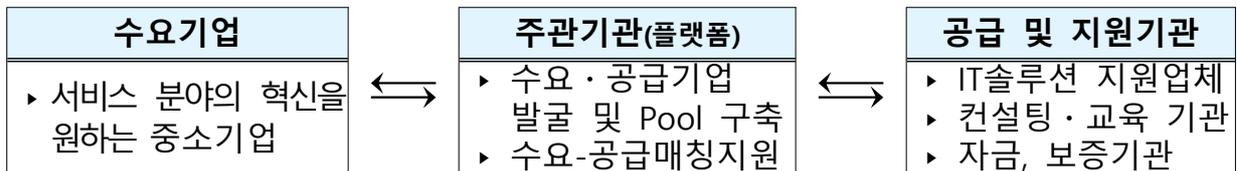
- 프로세스 관리, 물류관리, 고객관리, IoT 등 ICT 솔루션을 업종·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분야 확대

<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솔루션 사례(안)>

분야	솔루션	지원 예시 및 기대효과(안)
① 프로세스 관리	RPA (로봇자동화)	▶ 단순문서 작성·처리, 정보 등록 등 표준화된 단순 반복 업무 → 챗봇(Chatbot) 대체 등 자동화
② 물류관리	WMS (창고관리)	▶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정 구매량 및 재고량 산정, 운송관리 등 최적 물류계획 수립 → 물류비 절감
③ 고객관리	CRM (고객관리)	▶ 웨어러블 기기,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대기시간·절차를 줄이고 고객참여 및 만족도 증대
④ 자동화	IoT (사물인터넷)	▶ 각종 시설관리시 설비상태, 운전현황, 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 → 불량률 감소

- 서비스업 업종별 협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혁신 수요 기업과 ICT 솔루션 공급기업을 매칭하고, 컨설팅·자금지원 병행

<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체계(안) >



- 지원규모·대상, 주관기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‘스마트 서비스’ 지원 중심 「서비스 중소기업 ICT 활용방안」(19.9)을 통해 확정

## 4 거버넌스 체계화

◇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 추진하고, 기본계획 수립·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

① (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) 서비스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조속 추진

- 서비스산업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동법을 적용(기본법 성격)
  - \* 산업발전법(제조), 건설산업기본법(건설), 농업·수산업기본법(농·수산) 등
  -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은 동법에 근거한 기본·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협의
  - 산업간 융합 등으로 인한 新서비스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폭넓게 정의(OECD 기준을 활용한 16개 대분류)
- 입법 이전에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가능한 조치\* 우선 추진
  - \* (예시) 서비스 R&D 혁신 네트워크 본격화, ICT 활용 사업(스마트서비스) 신설, 유망 서비스업 표준 제정,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방안 마련 등
  -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, 기본·시행계획 수립, 교육기관·전문연구센터 지정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조속히 구체화

② (후속조치 추진)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시 후속조치 신속 추진

- ① (서비스산업발전위 신설) 서비스산업 관련된 주요 정책·계획 등을 심의·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신설
  - (구성)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(관계기관 추천)를 위원으로 구성
    - \* 20명 이내의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총 35명 이내

- (심의)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수행
  - 각 부처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(5년)·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추진실적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
  - 다수 부처가 관계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협의·조정
- ② (기본계획·시행계획 작성)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
  - 중장기적 시계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
    - 서비스 R&D 활성화·인증제, ICT 기술 활용, 인력 양성, 표준 제정, 창업·세제·국외진출 등 지원 방안 등 중점
    - 선택과 집중을 위한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과 보호 육성 서비스 산업(영세·저부가 업종 중심) 선정해 맞춤형 지원
    - 재정·금융 등 지원제도에 있어서 제조업 등과 비교해 서비스산업의 차별적인 요소를 지속 발굴·해소
  - 기본계획(5년단위)에 따른 연도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
- ③ (중점기관 구축)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점지원 기관 지정
  -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·기술 향상을 위해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·지원
    - 서비스산업 관련 기관·단체, 고등학교·대학교,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중에서 선발
  - 서비스산업 연구와 정책제언을 위한 전문연구센터 지정
    - 서비스산업·서비스 R&D에 대한 국내외 동향조사 및 정책 사례 연구 및 통계·연구결과 DB를 구축

## V.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 (+1 전략)

- ◇ 상반기 마련 중인 4대 유망 서비스업 업종별 대책과 병행하여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한 주요과제 중심의 핵심규제 개선

### (1) 보건·의료

#### ◇ 외국인 유치 강화, 품질 관리 등을 통한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

##### ① (유치 강화) 외국인 유치 강화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

- 한국 내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특구(관광진흥법에 따른 32개 관광특구)까지 광고 가능 지역 확대\*

\* 現 외국인전용판매장, 보세판매장, 제주도 면세점, 국제공항, 무역항 등 한정

- 성형·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 완화

\* 「성형외과, 피부과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」 개정

##### ② (서비스 질 제고) 경쟁촉진, 사후관리 강화 등 서비스 질 제고

- 외국인 환자의 선택권 제고 및 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해 모바일 통합정보서비스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\*

\* 법정 수수료율, 주요 서비스분야, 의료인 경력, 이용서비스 만족도 등 추가정보 제공

- 외국인의 본국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ICT 원격협진 기반 '현지 사후관리센터'를 단계적으로 확대

\* (현행) 몽골 제1병원(1개소) → (개선) 몽골 제1·2병원 등

##### ③ (세제 지원) 외국인 환자의 국내방문 유인 및 세원 양성화\*를 위해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('19→'20)

\* 부가세 환급 자료발급으로 공급내역 투명화를 통해 미용성형 분야 소득 과표 양성화

◇ **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新시장 창출**

① (경쟁력 제고)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의 제한적·한시적 도입 검토

\* 학교법인, 사회복지 법인 등 여타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간 합병 허용중

② (新시장 창출) 건강증진, 질병예방 등을 위한 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'규제 그레이존\*' 해소

\*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을 포괄적 규정하여 관련 서비스가 위법행위로 간주 우려

○ 사업화를 주저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회신의무를 부여하는 '규제 신속확인제도' 도입·운영

- (운영) 기존 **민관합동법령해석委**(공동위원장: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관·민간) **활용**
  - (적용분야)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의료행위 해당여부 유권해석
  - (회신의무) 위원회 회부 필요시 접수 후 **30일 내 위원회 개최**  
위원회 회부 불필요시 접수 후 **20일 내 신속확인**
- ※ 현재 회신의무 기간 無

○ 다양한 新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사례 축적을 통해 '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'을 주기적 보완

③ (규제자유특구 활용)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시범사업 추진

○ 혁신적인 보건·의료 서비스의 사업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특례\* 부여, 재정지원 등 추진

\* 규제 샌드박스 3종 세트 + 메뉴판식 규제특례(총 201개) 적용

○ 국민 생명·안전·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 마련 병행

## [2] 관 광

### ◇ 외국인 방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국내 관광 매력도 제고

#### 1] (사후면세점) 방한관광객 쇼핑편의 제고

-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(부가세, 개소세 환급) 한도 확대
  - \* 1회 30만원 미만, 1인 100만원 이하 → 1회 50만원 미만, 1인 200만원 이하
- 사후면세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즉시환급 시스템 구축지원 시범사업을 실시('19.下)하고 성과를 토대로 확대 추진 검토
  - \* 사후면세점 2만여 개 중 약 20% 수준의 점포만 즉시환급 가능('18년말 기준)
-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의 사후면세점 위치 정보 제공 및 사후면세 제도 홍보 강화

#### 2] (출입국 편의제고) 방한관광객 유치 확대 및 입국채널 다변화를 위해 크루즈·항공 등 출입국 편의 제고

- 크루즈 승객 입·출국 심사시간 단축 및 보안강화를 위해 관광상륙허가증 교부 방식을 QR코드 기반으로 전환('19.下)
- 개별관광객 관광상륙허가 시범사업\*('17년~) 내실화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,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 제도화 검토
  - \* 사전 지정된 크루즈를 이용하는 중국 개별관광객에 72시간 무비자 입국 허용
-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(ETA) 도입기반 마련(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, '19.下)

#### 3] (관광 혁신전략)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(4.2) 후속조치 이행

- 한류, 해양, 문화유산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 육성
  - 10개 내외의 K-pop 공연 및 한식·뷰티·패션 등 한류행사가 연계된 'K-culture 페스티벌'을 개최('19.10)하고 정례화 추진

- 섬 별 테마관광,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을 포함한 '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'을 수립('19.10)하여 비전 및 전략 제시
  - 마리나 비즈센터(부산·통영), 해양치유센터(완도) 건립 및 크루즈 항로 다변화(국내모항: '19, 23항차 → '20, 30항차) 등 추진
  - 국립공원 '섬' 지역 명품마을(9개소)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('19.11)
  - 경복궁 근정전 등 비공개 궁궐 개방('19년 113개 → '22년 123개) 및 외국인 템플 스테이 전문 사찰('19년 27개 → '22년 30개) 확대
  - 국제관광도시(1개소) 및 지역관광 거점도시(4개소) 연내 선정
  - 단일화된 관광진흥법을 숙박·개발·산업 등 분야별·기능별 맞춤형 지원체제로 분법\* 추진(연내 발의)
- \* 관광진흥기본법, 관광사업법, 관광숙박업법, 관광자원개발법으로 분법

## ◇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및 관광 투자 프로젝트 지원

- 1] (산림휴양관광) 산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해 산림휴양관광 민간TF 권고안\*을 토대로 제도개선 및 시범사례 창출 추진
  - \* 관계부처·지자체 추천 8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「산림휴양관광 민간TF」를 운영('19.2~5) → 산림휴양관광 제도개선 권고안 정부에 제출('19.6)
  - 유형·특례 수준 차등화, 개발 수익금의 공공목적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('19.10)
  - 대표 산림휴양관광지 사례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산지 규제 특례 부여 병행 추진
- 2] (복합 테마파크)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거점 구축을 위해 화성 복합 테마파크 접근성 제고 및 인허가 절차 신속 추진
  - 신안산선 실시계획에 테마파크 역사를 확정 반영하고(20.上), 개장시기('26)에 맞추어 해당 구간(원시-테마파크) 건설 완료 추진
  - 개발계획 변경 및 관광단지 지정 등 인허가 절차도 병행 추진하여 조속한 착공 지원

### (3) 콘텐츠

#### ◇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게임·영상 등 분야별 제도개선

- 1] (실감콘텐츠) VR·AR 등 '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' 마련('19.8)
  -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대규모 수요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,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확보 및 초대형 제작 스튜디오 구축
- 2] (게임) 게임산업 성장 및 e스포츠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핵심규제 개선
  -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민관협업체 운영을 통해 **셋다운제\***의 단계적 개선 추진(부모 요청시 적용 제외 등 다양한 방안 검토)
    - \* 현재 만 16세 미만의 경우 00-06시까지 일률적으로 게임 이용 불가
  -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
  - 등급변경을 요하는 게임 내용수정 시 '롤백 의무'를 합리적으로 개선
    - \* 현재는 수정 이전시점으로 서비스 강제소급(모든 데이터 삭제, 아이템포인트 회수 등)
- 3] (영상) 글로벌 미디어 확산에 대응, 국내콘텐츠 경쟁력 제고
  - 미디어기업 인수합병시 콘텐츠 투자확대 유도(심사시 조건부과 등 검토)
  - 콘텐츠 해외진출 확산을 위해 국가간 방송공동제작 협정 확대(現 8건)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, 아시아 영화교류센터 출범('20)
  -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재설계 및 일몰 연장 검토

#### ◇ 콘텐츠 체험, 창·제작 등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

- (체험)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신설('20: 3개소→'22: 5개소)하고, 대형 K-Pop 공연장(서울·인천/민자) 조성 등 추진
- (창·제작) 웹툰융합센터(부천), 스토리창작클러스터(진천), 뉴콘텐츠센터(일산),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(서울) 등 신설·운영

## (4) 물 류

### ◇ 입지→운송→생활물류 과정별 기업애로 해소 및 신규투자 촉진

#### ① (입지·시설) 수도권 등 물류거점 확충 및 첨단물류 투자 촉진

- 국·공유지·공공기관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내·인근 물류거점 발굴 및 민간투자 촉진

\* 대상입지 및 개발모델 마련('19.6) → 세부 개발계획 마련·추진('19.下)

-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등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

\* (현행) 전자상거래 물류시설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 가능 →  
(개선) 신산업 중심으로 입주자격 규제를 완화하는 '네거티브 존' 시범도입

- 첨단 물류시설 도입 등 생산성 향상 투자 지원 확대

- 물류서비스 혁신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해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\* 지원 범위 확대

\* 물류·로봇 업계 등 수요조사를 거쳐, 생산성향상 효과가 큰 장비·시설 선정

- 첨단 물류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인증 우수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한도 상향(60 → 100억원)

#### ② (운송·보관) 통관·운송 규제혁신 및 글로벌 배송거점 투자 유치

- 관세·통관 행정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

- 국제특송 물품의 자체시설 내 검사 대상 품목 확대·명확화

\* (현행) 특송물품 검사를 위해 별도 검사장으로 이송함에 따라 추가 비용·시간 초래  
(개선) ·폭발물, 검역대상물품, 식·의약품 등 안전관리 품목을 제외한 물품은  
업체 자체시설 내 검사

- 자유무역지역 보세창고의 장치기간 명확화

\* 보세창고 보관물품의 매각 허용 근거 마련(자유무역지역법 개정)

○ 해운·통관·내륙운송 등 수출입 물류 신속처리 및 물류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'스마트 육·해상 물류 연계\* 효율화 방안' 마련

\*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('19.1), 물류산업 혁신방안('19.6) 등 분야별 대책 기 발표

\*\* 4 산업혁명위원회, 해수부, 국토부, 관세청 등 참여 범부처 TF 개시('19.7)

○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물품을 중계 수출하는 글로벌 배송센터(GDC) 투자 유치 활성화

■ **Global Distribution Center** :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의 제품을 반입·보관하고 (B2B), 품목별로 제3국 소비자에게 배송(B2C)하는 중계 수출입 물류터미널

■ 인천공항을 동북아 전자상거래 허브기반으로 조성하기 위해 GDC 부지 확보\* 및 GDC 운영기업 인센티브\*\* 마련

\* 인천공항 2단계 물류단지(3필지)와 3단계 물류단지(3필지) 등 약 110천㎡

\*\* 국외반출신고 물동량 500톤 초과시, 초과 물동량에 대해 톤당 5만원 지급

■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원 수출국의 식물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등 반출입 절차 간소화 방안\* 검토

\* 수입 식물류에 대해 원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

③ (생활물류) '생활물류업' 지원체계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

○ 국민적 수요가 높은 택배·배달 등 생활물류, 플랫폼 운송업 등 新물류서비스에 대한 지원·관리 체계 정비

\* 新업종 구분 및 지원근거 신설 등 입법안 마련('19.7)

○ 개발 지연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\* 활성화를 위해 부처·지자체·사업체 간 협의체를 구성, 시범단지별 장애요인 해소 추진

\* 도심 생활물류 지원을 위해 서울 서초·양천·금천, 대구·광주·청주 등 6개소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를 선정('16.6)

○ 택배차량의 도심 내 주정차 가능지역 지속 확대

\* (현행) 서울 2,155개소, 경기 387개소 등 지역별로 일부 허용중 → (확대) 6월말까지 전국 전수조사를 거쳐, 추가 주정차 가능지역 선정

## (5) 020·공유경제

### ◇ 온라인 기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규제·제도개선 추진

#### 【新서비스 진입장벽 해소】

- ① 규제 샌드박스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신서비스의 시장진입 촉진
- (주방공유) 식품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복수(複數)의 영업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활용
    -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사업\* 운영 후 제도개선 사항 검토
  - \*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 창업매장에 대해 실증특례 허용('19.4)  
: 08-20시는 기존 영업자가 운영, 20-24시는 청년창업자가 운영
  - (주류 배달)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'음식에 부수하여' 주류배달을 허용하는 규정 명확화\* 검토
    - \* 현행 규정(주류통신판매고시)만으로는 주류배달 허용범위가 모호하여 혼란 여지

#### 【온라인 맞춤형 규제 재정비】

- ② 소규모·온라인 거래환경에 부합하도록 창업·진입요건 완화
- (관광안내업) 1인·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하여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고 시설요건을 대폭 완화(자택도 사무실로 인정)
    - \* 현재는 여행업 영위를 위해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별도의 사무실 구비 필요
  - (유료직업소개사업) 지속 확대되는 온라인 인력중개·알선 서비스에 대해 제반여건 검토\*를 통해 시설요건 완화 추진\*\*
    - \* 온라인 서비스 제공·이용방식, 구직자 보호,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 고려
    - \*\* 최근에도 사무실 전용면적 축소(20→10m<sup>2</sup>), 독립구조화(가벽설치) 의무 삭제('18.10)

○ (화물자동차) 소규모 물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·가맹사업의 자본금·자산평가액 기준 삭제

\* 현재는 사무실 보유, 자본금(1억원) 또는 자산평가액(5천만원) 기준 충족 등 필요

○ (출장미용) 고령화, 맞춤형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영업소 외에서의 이·미용시설 가능 요건\* 확대(고령자·장애인 요청시에도 허용)

\* 현재는 ①질병 등의 사유로 영업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, ②혼례 등 의식, ③봉사활동, ④방송 등 촬영, ⑤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

**【新서비스 질 제고·갈등해소 지원】**

③ 온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의 질 제고, 신뢰 확보 노력 병행

○ (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)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O2O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품·주행 등 안전기준 마련\* 및 주행제한 완화\*\*

\* (제품) 안전기준 고시 개정(국표원 '19.8), (주행) 법제개정 관련 연구용역 추진(국토부, '19.下)

\*\*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, 운전면허취득 면제 등(도로교통법·자전거법 개정)

○ (가사도우미 신뢰도 제고) 아이돌봄 업무를 겸하는 가사도우미에 대해 아이돌보미에 준하는 결격사유(범죄경력 등) 마련\*

\* 국회 계류 중인 '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'('17.12) 제정 후 반영

○ (공유숙박 갈등해소 노력)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 근절\* 등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

\* 4차위 주관 해커톤('18.9) 등에서 기존 숙박업계의 주요 요구사항

▪ 숙박중개플랫폼의 자율적 불법숙박업소 삭제 유도\*, 주기적 온라인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(6월, 10월) 등 추진

\* (예) 합법·불법 숙박업소 리스트 공유, 숙박중개플랫폼 자율규약 마련 등

## VI. 향후 조치계획

◇ 조속한 성과 달성을 위해 과제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망서비스 업종별 추가대책을 시리즈로 지속 마련

-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對국회 설득 강화
  -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통해 장기적인 시계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·시행
-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
  -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\*를 통해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·평가
    - \* 기재부 차관 주재,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
  - 점검결과는 경제활력대책회의(부총리 주재)에 상정하여 논의·보완
    - 미흡·지연과제 또는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
- 이번 대책과 병행하여 관광·보건·물류·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업종별 대책을 시리즈로 지속 마련·추진
  - \*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(4.2일),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(5.22일), 물류산업 혁신방안(6.26일) 등
  - 하반기에는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('19.8), 콘텐츠 분야별\* 발전방안('19.下) 등 마련
    - \* 영화·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 등
  - 업종별 협·단체, 연구·유관기관 등 의견 적극 수렴

**1.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**

과제	추진시기	협업부처 기관
▪ 부담금(16개) 면제혜택 지식서비스업 확대	'19.下	· 기재부
▪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업종 확대	'20	중기부
▪ 중소기업 창업 등 조세감면 지원업종 확대	'19.4/4	기재부
▪ 중소기업 근로소득세 감면 지원업종 확대	'20.1/4	기재부
▪ 정책금융기관 서비스 산업 자금공급 확대	'19~	금융위·중기부
▪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업종 확대	'19.3/4	금융위
▪ 혁신성장 공동기준 개편(유망 서비스업 확대)	'19.3/4	금융위
▪ 벤처확인제도 요건 개편	'19.3/4	중기부
▪ 창업지원법 대상 업종 확대	'19.6	중기부
▪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 방안 마련	'19.9	산업부 등
▪ 서비스산업 수출금융 확대	'19~	기재부
▪ 유망서비스업 무역보험 우대지원 일몰연장	'19.下	산업부
▪ 수출지원 사업 지원업종 확대	'19.下	중기부
▪ 서비스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확대	'20	중기부
▪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가능업종 확대	'19.7	과기정통부
▪ 과학기술-서비스 융합 R&D 위탁세액공제 적용	'19.下	기재부
▪ 서비스 R&D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시	'20	산업부·기재부
▪ 서비스 R&D 가이드라인 마련	'19.4/4	기재부·과기부

과제	추진시기	협업부처 기관
▪ 경제자유구역내 서비스 규제특례 부여 추진	'20	
▪ 규제특례심의위 내 서비스산업 분과위 운영	'19.下	중기부
▪ 종이영수증 발급관행 개선	'19.下	기재·금융위 등
▪ SW 공공조달 입찰제도 개선	'19.下	과기정통부
▪ 전시산업 공공용역대가 적정성 확보방안 마련	'19.下	기재부
▪ 서비스 표준화 전략 마련	'20.上	산업부
▪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마련	'20.上	산업부
▪ 제조전문서비스 수요기업 지원 시범사업 추진	'19.下	산업부
▪ 연구용품 수입 관세감면 혜택 확대	'20.1/4	기재부
▪ 서비스 중소기업 ICT 활용방안 마련	'19.9	기재·중기·산업 등
▪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통계 확충	'19.4/4	산업부

## 2. 유망 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

정책 과제	추진시기	협업부처·기관
<b>【보건·의료】</b>		
▪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광고 가능지역 확대	'20.下	복지부
▪ 성형·피부과 등 편중 의료광고 금지 완화	'19.下	복지부
▪ 모바일 의료관광 통합정보서비스 개편	'20.上	복지부·문체부
▪ 의료 관광 현지 사후관리센터 단계적 확대	'20.上	복지부
▪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 연장	'19.下	기재부
▪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 도입방안 논의	'19.下	복지부
▪ 의료행위 관련 규제 신속확인제도 운영·보완	'19.上~	복지부
▪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	'19.下	중기부·복지부

과제	추진시기	협업부처 기관
<b>【관 광】</b>		
▪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	'20.2	
▪ 즉시환급 시스템 구축지원 시범사업 실시	'19.8	문체부
▪ 모바일 앱을 통한 사후면세 홍보강화	'19.8	문체부
▪ QR코드 기반 크루즈 입·출국 심사 전환	'19.8	법무부
▪ 전자여행허가제 도입기반 마련(출입국관리법 개정)	'19.下	법무부
▪ 신안산선 실시계획 테마파크 역사 확정 반영	'20.上	국토부
▪ 테마파크 대상지 개발계획 변경	'19.下	국토부
▪ 테마파크 대상지 관광단지 지정	'20.上	경기도
▪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·발표	'19.10	문체부, 환경, 산림
▪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 거점도시 선정	'19.12	문체부
▪ K-Culture 페스티벌 개최	'19.10	문체부
▪ 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	'19.10	해수부
▪ 비공개 궁궐 개방, 템플스테이 전문사찰 확대	'19.6~	문체부, 문화재청
▪ 관광 법 체계 제·개정안 발의	'19.下	문체부
<b>【콘텐츠】</b>		
▪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	'19.8	과기·문체부 등
▪ 성인 월 50만원의 게임 결제한도 제한 폐지	'19.6	문체부
▪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 등급분류 면제	'19.7	문체부
▪ 미디어기업 인수합병 시 콘텐츠 투자확대 유도	'19.下	과기부·방통위
▪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일몰연장 검토	'19.下	기재부

과제	추진시기	협업부처 기관
<b>【물 류】</b>		
▪ 도심내·인근 물류거점 개발계획 마련	'19.12	
▪ 산업시설용지 내 네거티브 존 도입	'19.9	산업부
▪ 첨단 물류설비 대상 투자세액공제 지원	'20.3	기재부
▪ 우수물류기업 정책자금 지원한도 상향	'20	중기부·중진공
▪ 국제특송 물품 자체검사 대상 품목 명확화	'20	관세청
▪ 스마트 육·해상 물류연계 효율화 방안 마련	'19.12	해수부 등
▪ GDC 전용부지 확보 및 유치 인센티브 마련	'19.下	국토부·인천공항공사
▪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,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	'19.7	국토부
▪ 도시첨단물류단지 활성화 협의체 구성·운영	'19.7	국토부·지자체 등
▪ 택배차량 주정차 가능지역 확대 고시	'19.7	경찰청
<b>【020·공유경제】</b>		
▪ 관광안내업 신설	'19.10	문체부
▪ 화물자동차 운송주선·가맹사업 요건완화	'19.7	국토부
▪ 출장미용 허용요건 확대	'19.12	복지부
▪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기준 마련 추진	'19.12	국토·행안부 등
▪ 불법 숙박업소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	'19.6	문체부·복지부